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7호의2 중 “고충민원”을 “고충민원(제7호의3 및 제7호의4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7의4. 특이민원의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3장의 제목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제14조의5 중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6의 제목 “(연수원의 장)”을 “(교육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4조의7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45명”으로 한다.

제5장(제1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82”를 “495”로 하고, 일반직 계 “474”를 “4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49”를 “462”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심사보호국 1개 과	6명
2. 고충처리국 1개 과	6명

[별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제1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u>청렴연수원</u> 을 둔다.	제1조의2(소속기관) ----- ----- ----- ----- -- <u>국가청렴권익교육원</u> -----.
제10조(고충처리국) ①·② (생략)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7의2. <u>고충민원</u>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10조(고충처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고충민원</u> (제7호의3 및 제7호의4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u><신 설></u>	7의3. <u>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신 설></u>	7의4. <u>특이민원의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u>
8. ~ 19. (생략)	8. ~ 19. (현행과 같음)

제3장 청렴연수원

제14조의5(직무)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의6(연수원의 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① 교육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7(하부조직) -----

--- 교육원-----

-----.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45명-----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삭제

⑤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시정원) -----

----- 2026

<u>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4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에 둔다.	<u>년 12월 31일</u>-----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2</u>	<u>495</u>	+13
·	·	·	
·	·	·	
일반직 계	<u>474</u>	<u>487</u>	+1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49</u>	<u>462</u>	+1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